

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94. 4. 22

조례정비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: 박양헌 사회·도시위원장의 12인
- 나. 제출일자: 93. 12. 7
- 다. 회부일자: 93. 12. 23
- 라. 상정일자: 94. 4. 22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: 시회준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상 직할시는 농촌에 속하지 않으며 본 조례는 지역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3.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(전문위원 허면)

본 조례는 농촌지역의 행정기관에 두는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직할시는 농어촌특별조치법상의 농촌에 속하지 않으며, 지역여건으로 보아 농촌을 위한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역할이 없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하고자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이라 생각됨.

4. 토론요지

없음.

5. 수정안요지

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.

7. 첨부 :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 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(88. 5. 1 조례 제57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